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24일

나. 제 출 자 : 신현도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6.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현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자치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17조제7항)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 상 욱)

-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자치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7항을 종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모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 부칙 안 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본다.” 로 함.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교육제, 언론제, 경제제, 시민·사회단체,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구 18개동 중 위촉일자가 같은 동은 11개동, 위촉일자가 다른 동은 7개동이며 현재 18개동 427명 중 4년 이상 연임 279명, 4년 이하 연임 148명으로 임기만료시 한꺼번에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동시에 위·해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
----------	-----

발의년월일 : 2012년 5월 30일

발 의 자 : 신현도 의원 외 8명

1. 제안이유

-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자치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17조제7항)
-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8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해 지정된 자”를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의해 “수강료””를 “따라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을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 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방법에 따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7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닌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 구역”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원”을 “모두”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해촉후”를 “따른 위촉 해제 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 등)”을 “(실제 비용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범위내에서 실비를”을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따라 ----- ----- ----- ----- ----- -----.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조(원칙) ----- ----- -----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기능) ①----- ----- -----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② (생략)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

④-----
----- 그 밤에 -----

-----.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따라 지정된 사람 -----

----- 따라 “수강료” -----
-----.

④----- 인정하면 -----

----- 아닌 사람 -----

----- 사람이나 -----
-----.

⑤-----

----- 따라 -----

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생 략)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u>강구하여야</u>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 략)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u>범위내</u>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 략)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마련하여야</u> -----.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범위</u>----- ----- ----- -----. ④ (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u>의한</u>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u>의한</u>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⑥제2항에 <u>의하여</u>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⑤----- <u>따른</u> ----- ----- ----- ----- <u>따른</u> ----- ----- -----. ⑥제2항에 <u>따라서</u> ----- -----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1조(이용 등) ①·② (생략)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따른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 마련하여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

②-----
----- 범위-----
-----.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②----- 따른 -----

----- 해당 -----
-----.

제16조(기능) ①-----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따른 -----

-----.

제17조(구성 등) ①-----

해당 -----

-----.

②-----
----- 종사하는
사람 -----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 각 호의 방법에 따라 -----
----- 사람 중 -----

----- 사람을 -----
-----.

1. 해당 -----

----- 그 밖의 시민
·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따른 -----

-----.

④-----

아닌 사람 -----
-----.

⑤-----

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 관할구역-----
----- 종사하는 사람으-----

----- 사람을 -----.

⑥----- 모
두-----

----- 새로 -----

-----.

⑦-----

-- 하되 1회에 한하여 -----
-----. <단서 삭제>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

⑤ (생 략)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개최, 심의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5. (생 략)

②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

④----- 정해진 -----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촉 해제) ①-----
----- 다음 각
호의 -----
----- 위촉
해제----- 제4호
부터 제5호까지-----
-----.

-----.

1. 해당 -----

2. ~ 5. (현행과 같음)

②----- 따른 위촉 해제 후 -----

기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제21조(회의) ①-----

----- 인정할 -----

-----.

②----- 따른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실제 비용 보상 등) -----

-----.

-----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

제24조(시행규칙 등) ----- 시행

에 -----

-----.